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6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신장2동, 미사1동, 감일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지번 및 주택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

2. 주요내용

- 가. 신장2동, 미사1동, 감일동 통·반 신설(별표)
나. 미사1동 60통 관할구역 추가 및 공동주택명 현행화

구 분	현 행	개정 안	증 감		비 고
			통	반	
신장2동	62통 385반	63통 388반	(증)1통	(증)3반	통 신설 및 현행화
미사1동	71통 331반	72통 333반	(증)1통	(증)2반	
감일동	49통 237반	50통 239반	(증)1통	(증)2반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18,590천원/년

- 통장수당(6,080천원*3명, 월정수당·회의수당·상여금 등) = 18,240천원/년
- 반장상여금(50천원*7명) = 350천원/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6. 5. 15. ~ 2026. 6. 5.(21일간)
- 나. 의견 내용: 해당내용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신장2동, 미사1동, 감일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장2동	63통	1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1동
		2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2동
		3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3동
미사1동	36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1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7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3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8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5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9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8동 101호~2501호 / 102호~27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60통	1반	망월동 1146-1, 1146-2 하남미사 롯데캐슬 헤븐시티 1차
	63통	2반	망월동 1146 미사 디바인포레
		1반	망월동 1140 미사강변도시C3단지 304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 103호~2903호 (이하 현행과 같음)
감일동	50통	1반	망월동 1129 미사 아넬로 스위트
		2반	감이동 440-1 지웰 에스테이트 감일역 감이동 440-2 퀸즈애비뉴 감이동 443-1 반도 유스퀘어 감이동 443-2 KJ프라자
			감이동 441-1 감일 벨솔레파크 감이동 441-2 호평 메디컬타워 감이동 441-3 한양 더챔버파크로지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
	팀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팀장 이 재 민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서 정 욱 (031-790-5409)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장2동	63통	1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1동
		2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2동
		3반	신장동 572 하남쁘띠린 103동
미사1동	36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1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7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3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8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5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39통	1반	망월동 1177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3108동 101호~2501호 / 102호~2702호 (이하 현행과 같음)
	60통	1반	망월동 1146-1, 1146-2 하남미사 롯데캐슬 헤븐시티 1차
	63통	2반	망월동 1146 미사 디바인포레
		1반	망월동 1140 미사강변도시C3단지 304동 101호~2901호 / 102호~2902호 / 103호~2903호 (이하 현행과 같음)
감일동	50통	1반	망월동 1129 미사 아넬로 스위트
		1반	감이동 440-1 지웰 에스테이트 감일역 감이동 440-2 퀸즈애비뉴 감이동 443-1 반도 유스퀘어 감이동 443-2 KJ프라자
		2반	감이동 441-1 감일 벨솔레파크 감이동 441-2 호평 메디컬타워 감이동 441-3 한양 더챔버파크로지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하부의 조직), 제3조(확정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통·반 신설에 따른 통장 수당(6,080천원×3명, 월정수당·회의수당·상여금 등)

○ 통·반 신설에 따른 반장 상여금 지급(50천원×7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통·반 설치에 따른 통장 수당(월정수당·회의수당·상여금 등), 반장 상여금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고자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18,590	18,590	18,590	18,590	18,590
통장수당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반장 상여금	350	350	350	350	350

다. 재원조달방안 : 각 동 일반회계(2027년 본예산)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 정주연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5. 8. 11.] [조례 제2443호, 2025.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은 2개에서 2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 주택 등은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